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감독을 담당하는 시의 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명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②비상임이사에는 다음 각호의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감독을 담당하는 시의 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명
2.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

제22조제1항중 “3월 이내”를 “2월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55
------	-----

2003년 3월 25일  
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

나. 제안일자 : 2003년 2월 28일

다. 회부일자 : 2003년 3월 3일

다. 상정일자 : 2003년 3월 18일(제14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및 주요골자(제안설명자 : 건설기획국장 김영걸)

□ 제안이유

- 하수도사업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을 주요재원으로 하나 현재의 하수도 사용요금은 하수도 총괄원가에 훨씬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타 시의 사용요금보다 현저히 낮아 계속적인 재정적자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용요금을 상향조정(평균 22%)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하수도사용요금 효율표 조정(안 별표1)

구분 업종	사 용 요 금		
	사용구분(㎡)	㎡당 단가(원)	
		현행	조정
가 정 용	0~30이하	90	120
	30초과~50이하	240	280
	50초과	400	440